

학생상벌에 관한 규정

시행 : 2019. 7. 1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생생활규정 제18조(표창 및 징계의 절차 등)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표창 및 징계의 절차 등) 학생에 대한 표창 및 징계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혁신원 단장이 행한다.

제2장 위원회

제3조(학생상벌위원회) ① 학생에 대한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상벌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해당 대학(학부)장 또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추천·요구를 받거나,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표창 및 징계를 심의·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서울·국제캠퍼스별로 둘 수 있다.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 위원장은 미래혁신원 단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본교 교·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직자의 경우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 간사는 학생지원센터 과장(학생업무담당)이 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개진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의결의 기한) ① 위원회는 표창 또는 징계의 심의를 요구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련 형사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결할 수 있다.

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1항의 기간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의 비공개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3장 표창

제8조(표창의 종류 및 대상)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표창을 받을 수 있다.

1. 학업상 :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
2. 공로상 : 탁월한 지도력 및 봉사정신을 가진 자로서 학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
3. 문화상 : 문화부문에서 우수하고 창의적 업적을 나타내어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
4. 체육상 : 체육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거나 체육을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
5. 모범상 : 교내외에서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여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
6. 학술상 : 유명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학술적으로 우수한 업적을 나타내어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

7. 기타 지도교수의 표창 추천을 받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
제9조(표창 추천) 해당 대학(학부)장은 제8조의 요건을 갖춘 학생을 표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.

1. 공적조서 1부
2. 지도교수 추천서 1부

제10조(표창의 방법) ① 학업상은 총장상, 학장상, 우등상으로 구분한다. 총장상은 단과대학 또는 학부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해당 졸업생 중 4개년간 학업성적평균 최고득점자에게 졸업시에 수여한다.

② 학업상을 제외한 표창은 전학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매년 4월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할 수 있다.

③ 표창내역은 학적부에 기록한다.

제11조(결격자) 재학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징계의결이 요구중에 있는 자는 표창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
제4장 징계

제12조(징계의결의 요구) ① 학생생활규정 제17조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대학(학부)장 또는 해당 부서장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의 서류는 징계혐의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

1. 사건경위서
2. 징계혐의자의 진술서
3.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의견서
4.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자료
5.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해당대학(학부)장의 책임하에 조속한 진상조사와 자체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
제13조(징계사유의 시효)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(단, 「학생생활규정」 제17조제5호에서 정하는 성폭력·성희롱 관련 사안은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)

② 검찰·경찰 등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거나 파악한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등 제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.

④ 위원회의 징계의결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학생청원심의위원회(또는 법원에서)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4조(징계의 심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최 7일 전에 징계심의대상이 된 학생에게 징계심의에 회부된 사실 및 출석기일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징계심의대상이 된 학생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③ 징계의 심의대상이 된 학생이 2회 이상 출석 또는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 심사에 따라 징계의결할 수 있다.

제15조(징계의 양정)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, 학업성적, 개전의 정,

징계요구의 내용,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접근금지처분 등 징계처분에 부수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③ 근신의 경우 징계처분 전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면제할 수 있다. 사회봉사의 종류 및 시간, 사회봉사 이행 여부 등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.

④ 사회봉사활동 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사회봉사활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5조 제1항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.

제16조(징계의 효력) ① 근신은 1주일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수업 이외의 학생자치활동에의 참여를 금한다.

② 유기정학은 1주일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, 무기정학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③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고 수업을 받을 수 없다.

④ 제적은 본교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다.

⑤ 징계내역은 학적부에 기록한다.

제17조(통보) ① 미래혁신원 단장은 징계처분 사실을 즉시 관계부서, 학부모 및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관계부서에서는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사실을 통보 받으면 즉시 학사 등 관련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8조(징계처분의 발효) ① 징계처분의 발효일자는 징계처분서가 징계 대상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.

② 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징계처분의 발효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19조(청원심의) ①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양정, 절차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생청원심의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 청원심의를 청구한 경우, 청원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당초 징계처분의 효력을 유지된다.

제20조(징계해제) ① 근신과 유기정학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절차 없이 해제되며 무기정학은 개전의 정이 명확한 경우에 징계요청자의 해제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혁신원 단장이 해제한다.

② 미래혁신원 단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학생의 개전의 정, 품행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다.

제5장 보칙

제21조(보칙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혁신원 단장이 행한다.

부칙

1.(시행일) 본 규정은 199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2.(학생징계위원회규정의 폐지) 본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학생징계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0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0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3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